# 2023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

##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·7급·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월 2일

**인 사 혁 신 처 장**

##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

###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

| 구분 | 직렬(직류) | 선발예정인원 (총 305명) | 시험과목 | | 주요 근무예정부처(예시)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제1차시험(선택형 필기) | 제2차시험(논문형 필기) | |
| 5급 (행정) | 행정직(일반행정) | 전국 : 102명<br>지역구분 : 19명<br>* 지역별 구분모집 참조 | 언어논리영역, 자료해석영역, 상황판단영역, 헌법, 영어(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), 한국사(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) | 필수(4) : 행정법, 행정학, 경제학, 정치학<br>선택(1) : 민법(친족상속법 제외), 정보체제론, 조사방법론(통계분석 제외), 정책학, 국제법, 지방행정론 | 전 부처 |
| | 행정직(인사조직) | 2명 | " | 필수(5) : 행정법, 행정학, 경제학, 정치학, 인사·조직론<br>선택(1) : 산법, 노동법, 세법, 사회법, 국제법, 경제학 | 인사혁신처, 그 밖의 수요부처 |
| | 행정직(법무행정) | 5명 | " | 필수(4) : 행정법, 민법(친족상속법 제외), 행정학, 민사소송법<br>선택(1) : 산법, 노동법, 세법, 사회법, 국제법, 경제학 | 공정거래위원회, 법제처, 그 밖의 수요부처 |
| | 행정직(재경) | 60명 | " | 필수(4) : 경제학, 재정학, 행정법, 행정학<br>선택(1) : 산법, 회계학, 경영학, 세법, 국제경제학, 통계학 | 기획재정부, 금융위원회, 국세청, 그 밖의 수요부처 |
| | 행정직(국제통상) | 10명 | " | 필수(4) : 국제법, 국제경제학, 행정법, 영어<br>선택(1) : 경제학, 무역학, 재정학, 경영학, 국제정치학, 행정학, 독어, 불어, 러시아어, 중국어, 일어, 스페인어 | 산업통상자원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그 밖의 수요부처 |
| | 행정직(교육행정) | 6명 | " | 필수(4) : 교육학, 행정법, 행정학, 경제학<br>선택(1) : 조사방법론(통계분석 제외), 재정학, 정책학, 교육철학, 교육심리학, 교육사회학 | 교육부 |
| | 사회복지직(사회복지) | 3명 | " | 필수(4) : 사회복지학, 사회학, 행정법, 경제학<br>선택(1) : 조사방법론(통계분석 제외), 사회심리학, 사회문제론, 사회법, 사회정책, 행정학 | 보건복지부 |
| | 교정직(교정) | 3명 | " | 필수(4) : 교정학, 형사소송법, 형법, 행정법<br>선택(1) : 교육학, 사회학, 심리학 | 법무부 |
| | 보호직(보호) | 2명 | " | 필수(4) : 형법, 형사소송법, 심리학, 형사정책<br>선택(1) : 교육학, 사회학, 사회복지학 | |
| | 검찰직(검찰) | 2명 | " | 필수(4) : 형법, 형사소송법, 행정법, 교정학<br>선택(1) : 행정학, 경제학, 노동법, 사회법, 민법(친족상속법 제외), 회계학, 법의학 | 검찰청 |
| | 출입국관리직(출입국관리) | 1명 | " | 필수(4) : 형사소송법, 국제법, 형법, 행정법<br>선택(1) : 행정학, 정치학, 경제학, 민법(친족상속법 제외), 독어, 불어, 러시아어, 중국어, 일어, 스페인어, 아랍어, 말레이·인도네시아어 | 법무부 |
| 5급 (기술) | 공업직(일반기계) | 10명 | " | 필수(3) : 기계공작법, 기계설계, 재료역학<br>선택(1) : 열역학, 유체역학, 동역학, 자동제어 | 산업통상자원부, 특허청, 그 밖의 수요부처 |
| | 공업직(전기) | 9명 | " | 필수(3) : 전기자기학, 회로이론, 전기기기<br>선택(1) : 전력계통공학, 전력전자공학, 자동제어, 전자회로, 디지털공학 | |
| | 공업직(화공) | 8명 | " | 필수(3) : 화공열역학, 전달현상, 공업화학<br>선택(1) : 반응공학, 공정제어설계, 분리공정 | |
| | 농업직(일반농업) | 전국 : 2명, 지역구분 : 1명<br>* 지역별 구분모집 참조 | " | 필수(3) : 재배학, 식용작물학, 농업정보학<br>선택(1) : 토양학, 작물보호학, 원예학, 농촌사회학, 식품가공학 | 농림축산식품부, 그 밖의 수요부처 |
| | 임업직(산림자원) | 2명 | " | 필수(3) : 조림학, 임업경영학, 산림정책학<br>선택(1) : 산림공학, 수목학, 목재가공학, 조경학, 산림보호학, 임업경제학 | 산림청 |
| | 해양수산직(일반수산) | 전국 : 2명, 지역구분 : 1명<br>* 지역별 구분모집 참조 | " | 필수(3) : 수산생물학, 수산해양학, 수산경영학<br>선택(1) : 수산자원학, 수산양식학, 수산가공학, 어구어법학, 수산업법 | 해양수산부 |
| | 환경직(일반환경) | 전국 : 5명, 지역구분 : 1명<br>* 지역별 구분모집 참조 | " | 필수(3) : 환경화학, 환경계획, 상하수도공학<br>선택(1) : 소음진동학, 폐기물처리, 환경미생물학, 환경영향평가론, 대기오염관리, 수질오염관리 | 환경부, 그 밖의 수요부처 |
| | 기상직(기상) | 2명 | " | 필수(3) : 기상역학, 일기분석 및 예보법, 물리기상학<br>선택(1) : 기상측기 및 관측, 미기상학, 기상통계학, 기후학, 전자공학, 수치예보 | 기상청 |
| | 시설직(일반토목) | 전국 : 12명, 지역구분 : 2명<br>* 지역별 구분모집 참조 | " | 필수(3) : 응용역학, 측량학, 토질역학<br>선택(1) : 재료역학, 구조역학, 철근콘크리트공학, 수리수문학, 도시계획, 유체역학, 도로공학 | 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, 그 밖의 수요부처 |
| | 시설직(건축) | 전국 : 4명, 지역구분 : 1명<br>* 지역별 구분모집 참조 | " | 필수(3) : 건축계획, 건축구조학, 구조역학<br>선택(1) : 건축시공학, 도시계획, 건축재료, 철근콘크리트공학 | |
| | 시설직(시설조경) | 1명 | " | 필수(3) : 조경계획 및 설계, 조경사 및 이론, 조경생태학<br>선택(1) : 공원녹지학, 경관계획 및 관리, 단지계획학, 조경재료 및 시공, 조경식물학, 생태복원공학 | |
| | 방재안전직(방재안전) | 1명 | " | 필수(3) : 재난관리론, 안전관리론, 도시계획<br>선택(1) : 수리수문학, 재료역학, 건축구조학, 전기자기학, 화공열역학, 행정학 | 행정안전부, 그 밖의 수요부처 |
| | 전산직(전산개발) | 11명 | " | 필수(3) : 자료구조론, 데이터베이스론, 운영체제론<br>선택(1) : 컴퓨터네트워크, 프로그래밍언어론, 수치해석, 정보보호론 | 전 부처 |
| | 전산직(데이터) | 4명 | " | 필수(3) : 정보보호론, 인공지능, 데이터베이스론<br>선택(1) : 통계, 알고리즘 | |
| | 전산직(정보보호) | 1명 | " | 필수(3) : 정보보호 전반, 보안 S/W 개발, 소프트웨어공학<br>선택(1) : 정보보호 기술, 정보시스템 보안, 자료구조론 | |
| | 방송통신직(통신기술) | 10명 | " | 필수(3) : 전기자기학, 통신이론, 전자회로<br>선택(1) : 회로이론, 디지털공학, 영상신공학, 무선통신공학, 컴퓨터네트워크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그 밖의 수요부처 |

| 구분 | 선발분야 | 선발예정인원 (총 45명) | 시험과목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제1차시험(선택형 필기) | | 제2차시험(논문형 필기) | |
| | | | 필 수 | 선택과목 | 전공평가 | 통합논술 |
|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| 일 반 외 교 | 45명 | 언어논리영역, 자료해석영역, 상황판단영역, 헌법, 영어(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), 한국사(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) | 독어, 불어, 러시아어, 중국어, 일어, 스페인어 중 1과목(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) | 국제정치학, 국제법, 경제학 | 학제통합논술시험Ⅰ, 학제통합논술시험Ⅱ |

- 제1차시험의 헌법과목에서 100점 만점(25문항)에 6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. (제1차시험 합격선 결정 시 헌법과목 점수는 합산하지 않음)
- 지방행정론에 도시행정, 교통법에 행사장에 및 행행학, 경제학에 국제경제학, 국제법에 국제경제법,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·안보분야, 회계학에 정부회계가 포함됩니다.
- 인사·조직론 만점은 다른 필수과목 만점의 50%입니다.
- 방재안전 직류의 도시계획은 도시방재학이 포함됩니다.
-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, 2025년도부터 제2차시험의 선택과목이 폐지되며, 인사조직 직류에서는 행정학과 인사·조직론이 행정학으로 통합됩니다.
-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경우, 2025년도부터 학제통합논술시험Ⅰ과 학제통합논술시험Ⅱ가 학제통합논술시험으로 통합됩니다.
-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(행정)의 제2차시험은 법률과목(국제법 제외)에 한하여 배점이 배부되고,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(기술)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은 법전이 배부되지 않습니다.
-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(기술)의 제2차시험은 직류와 상관없이 시험장에 계산기를 지참하시기 바라며, 계산기 사용여부는 시험 당일 오전 교육시간에 안내합니다.
- 주요 근무예정부처는 예시이며, 기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● 선발 직렬(직류) 및 선발예정인원은 정부의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, 확정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(www.gosi.kr)를 통하여 공고합니다.

### ▣ 지역별 구분모집표

| 직렬(직류) | 계 | 서울 | 부산 | 대구 | 인천 | 광주 | 대전 | 울산 | 세종 | 경기 | 강원 | 충북 | 충남 | 전북 | 전남 | 경북 | 경남 | 제주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계 | 25 | 7 | 3 | 2 | 2 | 1 | 1 | 1 | - | 2 | - | 1 | 1 | 1 | 1 | 1 | 1 | - |
| 행정직(일반행정) | 19 | 5 | 2 | 1 | 1 | 1 | 1 | 1 | - | 1 | - | 1 | 1 | 1 | 1 | 1 | 1 | - |
| 농업직(일반농업) | 1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1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
| 해양수산직(일반수산) | 1 | - | 1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
| 환경직(일반환경) | 1 | - | - | - | 1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
| 시설직(일반토목) | 2 | 1 | - | 1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
| 시설직(건축) | 1 | 1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

### 2 시 험 방 법

- 제1차시험 : 선택형 필기, 제2차시험 : 논문형 필기, 제3차시험 : 면접

### 3 응 시 자 격

**가. 응시결격사유 등** :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(면접시험 최종예정일) 현재를 기준으로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외무공무원은 「외무공무원법」 제9조, 검찰직·마약수사직 공무원은 「검찰청법」 제50조)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4조(정년)·「외무공무원법」 제27조(정년)에 해당하는 자 또는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○ 「**국가공무원법**」 **제33조(결격사유)**
- 피성년후견인 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● 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피치료감호자 ● 「공직선거법」 제266조제1항에 따른 선거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● 「병역법」 제7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● 「보훈병원 및 국민건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2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● 「정치자금법」 제57조에 따른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※ 공무원 임용제한 기간 등은 개별 법령에 따름
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(2019.4.16.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)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(2019.4.17.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)
-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) (2019.4.17.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) - 「청소년성매수 이용촉진 및 청소년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(2022.12.27.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)
-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(2022.12.27.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)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○ 「**외무공무원법**」 **제9조제2항(외무공무원)** 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

○ 「**검찰청법**」 **제50조제3항(검찰청 직원)** 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

○ 「**국가공무원법**」 **제74조(정년)** -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. -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.

○ 「**외무공무원법**」 **제27조(정년)** - 외무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. - 정년에 이른 외무공무원은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하고,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.

**나. 응시연령** : 20세 이상(2003.12.31. 이전 출생자) ※ 2024년도부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이 '18세 이상'으로 조정됩니다.(단, 교정 및 보호직렬은 '20세 이상'으로 유지)

**다. 학력 및 경력** : 제한 없음

**라.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**(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(면접시험 최종예정일) 현재 유효한 것) ※ 2024년도부터 7급·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이 폐지됩니다.

| 7급 | 9급 |
|---|---|
|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, 정보통신기술사, 정보관리기술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, 정보통신기사, 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, 정보보안기사 |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, 정보통신산업기사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정보보안산업기사,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※ 7급에 필요한 자격증은 9급에도 인정됩니다. |

**마.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** : '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

●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,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. ●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(직류) 외의 다른 직렬(직류)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.

●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(7급 제1차시험, 9급 제1·2차시험(병합실시))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.

**바.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** : 다음 조건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기간(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)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

①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(생계·주거·교육·의료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) ②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※ 단, 수급자 및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합산하여(중간 공백없이)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도 응시 가능

● 근복지(현역, 대체복무)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,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(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(지원대상자)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(지원대상자)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.[다만, 근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(지원대상자)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, 이 경우에도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, 이 경우 급여(지원)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, 급여(지원)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야 함]

※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·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(지원대상자)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(지원대상자)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, 이 경우 급여(지원)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, 급여(지원)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야 함 ※ 단,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(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

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·군·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(수급기간 명시), 한부모가족증명서(지원기간 명시)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※ 수급(지원)기간이 명시된 수급자(한부모가족)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·군·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(동일세대원에 한함)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, 방문 전 시·군·구청 기초생활보장·한부모가족담당자(주민생활지원과, 사회복지과 등)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●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「공개인사자료」(인사혁신처 예규, 인사혁신처 홈페이지-법령·통계정보-법령정보-훈령/예규/고시)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(☎044-201-850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**사.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**

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지역별 구분모집은 2023.1.1.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.(다만, 서울·인천·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음)

### 4 응시원서 제출기간 및 시험일정

| 구분 | 응시원서 제출기간 | 취소기간(추가취소기간) | 구분 | 시험장소 공고일 | 시험일 | 합격자 발표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5급(행정) | 1.28. 09:00~1.30. 21:00 | 1.28. 09:00~2.2. 18:00<br>( 2.20. 09:00~2.22. 18:00) | 제1차시험 | 2.24. | 3. 4. | 4. 6. |
| | | | 제2차시험 | 4. 6. | 6.24.~6.29. | 9.18. |
| | | | 제3차시험 | 9.18 | 10.10.~10.12. | 10.24. |
| 5급(기술) | | | 제1차시험 | 2.24. | 3. 4. | 4. 6. |
| | | | 제2차시험 | 4. 6. | 6.30.~7. 5. | 9.18. |
| | | | 제3차시험 | 9.18. | 10.10.~10.12. | 10.24. |
|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| | | 제1차시험 | 2.24. | 3. 4. | 4. 6. |
| | | | 제2차시험 | 4. 6. | 6.24.~6.29. | 9.18. |
| | | | 제3차시험 | 9.18. | 10.13. | 10.24. |

● 시험장소, 합격자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(www.gosi.kr)에 공고하며, 시험운영상 시험 일정·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● 부득이한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응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험 지역·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, 직렬·직류별로 시험 일자·시간 등이 다르게 실시되는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● 시험정보 안내 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(www.gosi.kr)에 게시하며, 시험설계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### 5 응시원서 제출(인터넷 제출만 가능)

**가. 제출방법 및 제출시간**
- 제출방법 : 사이버국가고시센터(www.gosi.kr)에 접속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제출기간 : 2023. 1.28.(토) 09:00 ~ 1.30.(월) 21:00 (기간 중 24시간 접수)
  ※ 응시수수료(10,000원)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(휴대폰·카드 결제, 계좌이체비용)이 소요됩니다.
  ※ 응시원서 제출 당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.
  ※ 응시원서 제출 시 등록용 사진파일(JPG, PNG)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.

**나. 제출 시 유의사항**
- 원서제출기간에는 기재사항(응시직렬, 응시지역, 선택과목, 지방인재 여부 등)을 수정할 수 있으나, 제출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.
-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(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지역별 구분모집 분야는 제외)에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지방인재 여부를 표기·확인하고, 본인의 학력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.
- 장애인 등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시설을 할 수 있으며,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,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제출 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(www.gosi.kr)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※ 장애인 편의제공 관련 정작문제지는 2020년 개정된 「한국 점자 규정(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-38호(2020.9.10.))」에 따라 제공합니다.
-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(서울,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)에서만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, 제2·3차시험은 서울·정기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.(변경 시 추후 별도 공고할 예정)
-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도 제1차시험 응시지역(시험 볼 장소)이 제한되지 않으며, 응시원서에 표기한 지역에서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- 원서제출 취소마감일 18:00까지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. ※ 취소 마감일 내에 취소하지 못할 경우, 별도로 지정된 추가 취소기간을 활용하여 원서제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.

### 6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

**가.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**

| 구분 | TOEFL | | TOEIC | TEPS (`18.5.12. 전 시험) | TEPS (`18.5.12. 이후 시험) | G-TELP | FLEX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PBT | IBT | | | | | |
| 5급(행정·기술) | 530 | 71 | 700 | 625 | 340 | 65(level 2) | 625 |
|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| 590 | 97 | 870 | 800 | 452 | 88(level 2) | 800 |

※ 청각장애의 정도가 '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(기존 청각장애 2·3급)'이거나 '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% 이하'인 응시자의 경우,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.
[해당자는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, 중증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「2023년 영어·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(인사혁신처 공고 제2022-729호)」 참고]
- 5급(행정·기술) : TOEIC 350점, TEPS('18.5.12. 전 시험) 375점, TEPS('18.5.12. 이후 시험) 204점, TOEFL(PBT) 352점, FLEX 375점
-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: TOEIC 430점, TEPS('18.5.12. 전 시험) 476점, TEPS('18.5.12. 이후 시험) 271점, TOEFL(PBT) 392점, FLEX 480점

**나.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**
- 2018.1.1.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,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(등급)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.
- 2018.1.1.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, 미국에서 응시한 G-TELP는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(등급)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.
- 다만,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(TOEIC, TOEFL, TEPS, G-TELP)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,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(www.gosi.kr)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. ※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(정기)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, 정부기관·민간회사·학교 등에서 승진·연수·입사·입학(졸업)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·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
**다. 성적 제출방법**
- 응시자는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제출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, 등록번호,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,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합니다.
-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(2023.2.27.(월)~3.3.(금))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(www.gosi.kr)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합니다.

### 7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

**가. 기준점수(등급)** : 한국사능력검정시험(국사편찬위원회) 2급 이상

**나.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**
-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(등급)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. ※ 2023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(기존 5년)이 폐지됩니다.

**다. 성적 제출방법**
- 응시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에 해당 시험일자, 인증번호,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.
-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(2023.2.27.(월)~3.3.(금))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(www.gosi.kr)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합니다.

### 8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(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한함)

**가.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**

| 구분 | 독어 | | | 불어 | | 러시아어 | | | 중국어 | | | 일어 | | | 스페인어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스넬트 (SNULT) | 플렉스 (FLEX) | 독일어능력시험 (Test DAF) | 괴테어학검정시험 (Goethe Zertifikat) | 스넬트 (SNULT) | 플렉스 (FLEX) | 델프/달프 (DELF/DALF) | 스넬트 (SNULT) | 플렉스 (FLEX) | 토르플 (TORFL) | 스넬트 (SNULT) | 플렉스 (FLEX) | 한어수평고시 (신HSK) | 스넬트 (SNULT) | 플렉스 (FLEX) | 일본어능력시험 (JPT) | 일본어능력시험 (JLPT) | 스넬트 (SNULT) | 플렉스 (FLEX) | 델레 (DELE) |
|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| 60점 | 750점 | 수준 3 | GZ B2 | 60점 | 750점 | DELF B2 | 60점 | 750점 | 1단계 | 60점 | 750점 | 5급 210점 | 60점 | 750점 | 740점 | N2 150점 | 60점 | 750점 | B2 |

※ 청각장애의 정도가 '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(기존 청각장애 2·3급)'이거나 '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% 이하'인 응시자의 경우,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.
[해당자는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, 중증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「2023년 영어·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(인사혁신처 공고 제2022-729호)」 참고]
- SNULT 30점, FLEX 450점

※ 신HSK의 경우 IBT(인터넷 기반 시험)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.

**나.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**
- 2018.1.1.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,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(등급)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. ※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성적의 경우 진위확인이 어려워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, 국내에서 시행되는 검정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다만,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(SNULT, 신HSK, JPT 등)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로 안내하는 기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(www.gosi.kr)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. ※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(정기)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, 정부기관·민간회사·학교 등에서 승진·연수·입사·입학(졸업)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·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
**다. 성적 제출방법**
- 응시자는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제출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, 등록번호,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,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합니다.
-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(2023.2.27.(월)~3.3.(금))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(www.gosi.kr)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합니다.

### 9 지방인재채용목표제

**가. 대상시험** :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(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지역별 구분모집분야는 적용 제외)

**나. 적용대상** :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졸업(예정)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(예정)·중퇴하거나 재학·휴학 중인 자(응시원서 제출 마감일 기준)
※ 최종학력 및 서울 소재 학교 재학 이력 등에 따라 지방인재 해당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이버국가고시센터(www.gosi.kr)의 시험안내 )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활용하여 지방인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**다.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상한**(인원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)
- 시험실시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20%입니다.
- 채용목표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% 이내로 제한됩니다.(다만, 제1차시험에서는 추가합격의 상한제한을 두지 않음)

**라. 중복서류 제출** :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응시대상자(제1차시험 면제자 포함)는 중앙시험(학력기술사, 출입증명서 등)을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(www.gosi.kr)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, 기간 내 중앙시험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**마.** 지방인재 검증은 제1차시험 합격자(면제자 포함)를 대상으로 실시하며, 검증 결과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아 추가 합격한 사람이 지방인재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1차시험 합격이 취소되며,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(다만, 제1차시험 면제자 중 지방인재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제2차시험부터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)

### 10 양성평등채용목표제

**가. 대상시험** :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(교정·보